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81
----------	------

2017년 3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 2. 27. 김용석 의원(찬성자 박진형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17. 2. 27.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7년 3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성과중심의 재정 운영과 결산정보의 활용률 제고 등을 위한 통합결산 제도가 도입되어 재무제표 등 결산 대상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2014.11.29.)되고, 이후 국가의 재정 관련 법령 체계와 같이 「지방재정법」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내용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2016.11.30.)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통합결산제도 도입 후 결산 대상이 변경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2014.11.29.시행) 중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2016.11.30.)됨에 따라,

- 이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및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변경(안 제7조제1항 각 호)

- 지난 2014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과 결산정보 활용률 제고 등을 위한 ‘통합결산제도’가 도입되어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이원적 결산체계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2014.11.29.)되었음.
 - 이는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함으로써 실제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해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또한 결산에 있어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 체계와 동일하게 변경해 결산정보 활용률을 높이고자 한 것임.
- 이후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중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지방회계법」으로 분법(分法)하여 시행하고 있음(2016.11.30.).

<그림 1> 결산검사 범위 및 내용에 관한 관계법 개정 변천

개정 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2014. 11. 29. 시행)	지방회계법(2016. 11. 30. 시행)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 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부산·대전·울산·강원·전북·경남·세종)는 이와 같은 결산 관련 관계법 사항을 수용해 결산검사를 운영 중임(별첨 1 참조).
- 이에 본 개정안은 통합결산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방회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 시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1> 결산검사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u>1. 세입과 세출의 결산</u> <u>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u> <u>3. 채권과 채무의 결산</u> <u>4. 재산과 기금의 결산</u> <u>5.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u>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u>1. 결산 개요</u> <u>2. 세입·세출 결산</u> <u>3. 재무제표</u> <u>4. 성과보고서</u> <u>5. 결산서의 첨부서류</u> <u>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u>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과 결산정보 활용률 제고 등을 위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의 내용에 맞춰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개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관계법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관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결산검사 시 법적 근거에 대한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1
----------	------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27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 의원(1명)
찬 성 자 : 박진형·박준희·이신혜
박호근·조상호·박마루
서윤기·장우윤·이윤희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성과중심의 재정 운영과 결산정보의 활용률 제고 등을 위한 통합결산 제도가 도입되어 재무제표 등 결산 대상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2014.11.29.)되고, 이후 국가의 재정 관련 법령 체계와 같이 「지방재정법」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내용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2016.11.30.)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조례의 목적에 인용함(안 제1조).
- 나.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정부투자기관”의 근무 경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 경력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 라. 결산에 있어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제도 및 성과주의 도입과 통합결산서 작성 등의 기준에 맞춰 결산검사의 내용을 변경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타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를”을 “사람을”으로,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5조제1항제2호 중 “검사기간중”을 “검사기간 중”으로, 제3호 중 “결산검사기간”을 “검사기간”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검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을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결산검사 기간을”을 “검사기간을”으로 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제9조 제1항 중 “결산검사 기간에”를 “검사기간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결산검사기간이”를 “검사기간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략)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u>자</u>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u>자</u>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u>자</u> 3. <u>정부기관 및</u>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u>그 만큼의</u> 직위에 있었던 <u>자</u> 4. <u>정부투자기관</u>,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u>그 만큼의</u> 직위에 있었던 <u>자</u> 5. (생략) <p>③ ~ ⑤ (생략)</p> <p>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결산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p>②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u>사람</u>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u>사람</u>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u>사람</u> 3. <u>국가 또는</u>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u>그만큼의</u> 직위에 있었던 <u>사람</u> 4.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u>그만큼의</u> 직위에 있었던 <u>사람</u> 5. (현행과 같음)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과 세출의 결산 2. 계속비와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5.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p>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6조제2항의 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실제비용) ① 시장 등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p>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등의 검사기간을 제6조제2항의 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실제비용) ① 시장 등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서울특별시 등의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